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, 정부세종청사 6동
- 전자우편 : jisun.lee@korea.kr
- 팩스 : 044) 201-7130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(전화 (044) 201 - 7114, 팩스 044)201-713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**환경부공고제2020-611호**

「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9일

환 경 부 장 관

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제정 이유

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(저탄소제품)의 범위, 기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방법, 준수사항 등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저탄소제품 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)
- 나. 저탄소제품 인증 시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다. 저탄소제품이 제품안전 및 환경위해성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(안 제5조)
- 라. 도안 모형을 통일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(안 제7조)
- 마. 저탄소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(탄소발자국)를 유지하는지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8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

3. 제출의견

「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」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. 7. 9.(목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환경산업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| 개 정(안) | 수 정(안) | 수 정 사 유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| | |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kihyun89@korea.kr

2) 주소 : (우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

3) 팩스 : 044-201-6700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(전화 : 044-201-671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 “입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고용노동부공고제2020-257호

안전인증 취소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“추락·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”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6. 19.

고용노동부장관

○ 안전인증 취소 현황

| 제품명 | 형식 모델 | 인증번호 | 제조사 (대표자) | 사업장 소재지 | 취소 일자 | 취소사유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조립식 안전난간 | YP301 | 14-DA2BP- 0246 | 유풍금속공업 (김한무) | 인천 서구 설원로 121(대곡동) | 2020- 05-25 | 법 제86조 |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827호

「주택법」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9일

국토교통부장관

투기과열지구 지정

- 대상지역 : 경기도 수원시, 성남시 수정구, 안양시, 안산시 단원구, 구리시, 군포시, 의왕시, 용인시 수지구·기흥구, 동탄2택지개발지구(화성시 반송동·석우동, 동탄면 금곡리·목리·방교리·산척리·송리·신리·영천리·오산리·장지리·중리·청계리 일원), 인천광역시 연수구, 남동구, 서구, 대전광역시 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구
- 지정기간 : 2020. 6. 19. ~ 지정 해제시까지
- 지정효력
 - 「주택법」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
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·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
 -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